

규제영향분석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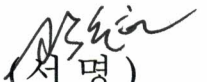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목 차>

1.전공의가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는 사유 추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작 성 자	이름	홍정원
	담당부서 (과)	의료인력정책과		직급	보건 주사보
	국장	곽순헌 보건의료정책관		연락처	044-202-2436
	과장	방영식 의료인력정책과장		이메일	garden31@korea.kr

2026. 04. 21. 작성

정 책 책 임 자 직 위 : 국 장 성 명 : 보건의료정책관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전공의가 추가수련을 받아야 하는 사유 추가								
	2.규제조문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 4조 제3항								
	3.위임법령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제 5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6.05.11~2026.06.2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의료법에 따라 전문의 수련 및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의수련규정(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음 ○ 환자 안전 보장과 의료서비스 질을 위해 전문의로서의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수련 질을 담보하여야 하며, 그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기간에 대해 규정함								
	7.규제내용	○ (현행) '전문의수련규정 시행규칙'은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일을 산정하며, 예외적으로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그 기간 전체를 추가수련 받도록 하고 있음 - 이로인해 '징계' 이외에 '면허정지' 등의 사유에 대해서도 추가수련이 최대 1개월 면제됨 ○ (개정안) 징계에 준하는 유사 사유*에 대해서도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를 추가수련 받도록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 징계, 면허정지, 무단결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전공의</td><td>매년 13,000여명</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공의	매년 13,000여명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전공의	매년 13,000여명								
9.규제목표	전공의 수련 질 담보, 역량있는 전문의 양성, 환자 안전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 (영향집단) 전공의, 국민 ○ (편익분석) 전공의에게는 일정 부담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나, 적정 수련기간 확보에 따른 환자안전 확보 등 의료서비스 질 측면에서 공익적 편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 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I. 규제 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전문의수련규정 시행규칙」은 부득이한 사유로 전공의가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일을 산정하며, 예외적으로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만 그 기간 전체를 추가수련 받도록 하고 있음
- 동 규정상 '징계'로 사유가 한정되어 있어, '면허정지' 등에 대해서도 추가수련이 최대 1개월 면제되는 관행 지속
- 이에, 징계에 준하는 사유에 대해서도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를 추가수련 받도록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현행 유지안) 전공의가 수련병원등의 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 산정
 - 전공의가 의료법에 따라 면허정지를 받은 경우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어 최대 30일까지 추가수련이 면제됨
 - 전공의의 수련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나, 휴가·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면허정지 기간과 같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기간까지 수련을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적정 수련 질 담보가 어려움
- (개정안) 면허정지, 무단결근 등의 사유도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를 추가수련 받도록 하여 적정 수련기간 및 수련 질 확보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전공의, 수련병원	「전문의 수련규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예정	-	-

3. 규제목표

- 전공의 적정 수련의 질 담보 및 환자 안전 제고

II. 규제 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전공의의 병가, 경조사 휴가, 연차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수련공백이 발생한 경우, 현행 「전문의 수련규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최대 1개월까지 추가수련이 면제됨
- 동 개정안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면허정지 기간 또는 무단결근 기간 등은 해당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공의의 적정 수련기간 확보 및 이를 통해 수련 질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전공의 적정 수련기간 확보 및 역량 함양을 위한 규제로, 일몰 설정은 적절하지 않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 타법사례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문의 수련규정」 제18조에 따라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동 규정에 따른 수련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규제 준수 유인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수련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공의 수련공백 및 추가수련일에 대해 관리하고 있어 추가적인 행정 부담 없음

○ 재정적 집행가능성

- 현재 '수련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공의 수련공백 및 추가수련일에 대해 관리하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17.1.31.) 「전문의 수련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개정에 따라 징계를 받는 경우 해당 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을 받도록 규정

개정 전	개정 후(2017.1.31. 시행)
제4조(수련기간의 변경) ①~② (생략) ③ 영 제5조제6항제2호에 따라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제4조(수련기간의 변경) ①~② (생략) ③ 영 제5조제6항제2호에 따라 휴가 또는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수련받지 못한 전공의는 수련받지 못한 기간 중 1개월을 제외한 기간만큼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 <u>다만, 징계의 사유로 수련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수련받지 못한 기간 전체에 대하여 추가수련을 받아야 한다.</u>

2. 향후 평가계획

- '수련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전공의별 수련공백 및 추가수련일 지속 관리

3. 종합결론

- 본 규제는 피규제자 및 규제자의 이행 부담이 수용 가능한 수준이며, 전공의 역량 제고 및 환자 안전 담보를 위한 적정 수준의 규제임

별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6	2026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전공의 추가수련 발생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 (영향집단) 전공의, 국민 ○ (편익분석) 전공의에게는 일정 부담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으나, 적정 수련 기간 확보에 따른 환자안전 확보 등 의료서비스 질 측면에서 공익적 편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전공의 추가수련 발생>

①피규제 일반국민 :

□비용

(정성)영향집단명	전공의
활동제목	전공의 추가수련 발생
비용항목	기타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 (규제내용) 전공의의 면허정지,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수련 공백이 발생한 경우 해당기간 전체에 대해 추가수련일 산정 ○ (비용분석) 개인별 수련공백의 기간에 따라 현행 규정 대비 최대 30일의 추가수련이 발생하여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다만, 추가수련 발생일이 개인별 상이한 점을 고려할 때, 사전에 비용을 특정하여 분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편익

(정성)영향집단명	일반 국민 (환자 등 의료서비스 이용자)
활동제목	전공의 추가수련 발생
편익항목	전공의 적정 수련기간 담보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 전공의 적정 수련기간 확보에 따라 수련의 질이 담보되며, 이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 환자 안전이 제고됨

